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이하 “협회”이라 한다.)행하는 공사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협회소정양식) 1통
2. 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장기물품제조에 있어서는 총 제조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정보통신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은행”이라 한다.)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국채, 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6. 협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 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협회의 소정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⑥ 입찰금액은 제3조(입찰보증금)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부가세포함)의 5분의 100(장기물품제조에 있어서는 총 제조금액의 3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여 작성할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처리 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는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명하거나 정당한 정정낭인을 누락한 입찰
8.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9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협회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 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 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협회의 수요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가 특히 지정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하“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⑦ 입찰서와 함께 품질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 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⑧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회계규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 제조 및 제2차 물품 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 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0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외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견품의 망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및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다.

제12조(입찰의 연기등) ① 협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고의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당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5.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8. 일반경쟁 또는 제한 경쟁계약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17조(기타사항) 입찰 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